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성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856

발의연월일: 2024. 7. 17.

발 의 자:정성호·김남희·김정호

문진석 • 민병덕 • 민형배

윤호중 • 윤후덕 • 이연희

임미애 · 정준호 · 최기상

한정애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거주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는 전액을, 10만원을 초과하고 5백만원 이하인 금액에 대해서는 10만원과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%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재난이 발생하여 그 수습에 특별한 지원이 요구되는 지 역임에도 불구하고 고향사랑 기부금에 있어서 여타 지역과 차등 없는 내용을 적용받고 있음.

이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경우 20만원에 대하여 전액을, 2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는 20만원과 초과금액의 15%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려는 것 임(안 제58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"을 "구분에 따른 계산식으로 계산한 금액"으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부분 단서 중 "1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제1호를 따르되,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"을 "각 호의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20만원(제2호나목의 경우 10만원)을 초과하는 금액"으로, "손금"을 "필요경비"로 하며,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(이하 이 조에서 "특별재난지역"이라 한다)에 기부한 경우(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기부한 경우로 한정한다)
 - 가. 2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: 고향사랑 기부금 × 110분 의 100
 - 나. 20만원 초과 5백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: 20만원 × 1 10분의 100 + (고향사랑 기부금 - 20만원) × 100분의 15
- 2.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
 - 가. 1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: 고향사랑 기부금 × 110분

의 100

나. 10만원 초과 5백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: 10만원 × 1 10분의 100 + (고향사랑 기부금 - 10만원) × 100분의 15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적용례) 제58조제 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기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혅 행 제58조(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) ① 거주자가 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 률」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 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 우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 라 계산한 금액을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 세액에서 공제한다. 다만, 사업 자인 거주자의 경우 10만원 이 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제1호를 따르되, 10만원을 초과하는 금 액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.

- 1. 1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: 고향사랑 기부금 ×110분의 100
- 2. 10만원 초과 5백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: 10만원 × 110분의 100 + (고향사랑 기부금 - 10만원) × 100분의 15

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」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 체(이하 이 조에서 "특별재난 지역"이라 한다)에 기부한 경우(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 내에 기부한 경우로 한정한

----필요경비-----.

다)

<u>가. 2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</u> 부한 경우: 고향사랑 기부 금 × 110분의 100

나. 20만원 초과 5백만원 이 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: 20만원 × 110분의 100 + (고향사랑 기부금 - 20만 원) × 100분의 15

2.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방자치 단체에 기부한 경우

<u>가. 1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</u> <u>부한 경우: 고향사랑 기부</u> 금 × 110분의 100

나. 10만원 초과 5백만원 이 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: 10만원 × 110분의 100 + (고향사랑 기부금 - 10만 원) × 100분의 15
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②・③ (생략)